

투자과 연금

SPRING 2022 Vol.06

➕ FOCUS

노후자금 투자,
'순서'가 중요하다

➕ INSURANCE TECH

낭종이 발견되었는데
보험 가입시 알려야하나요?

➕ ASSET RESET

월세 주는 ETF도
있나요?

I R P

〈개인형 퇴직연금〉

전성시대



클라우드컴퓨팅



게임



밀레니얼테마



리튬&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원격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클리닉테크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핀테크

GLOBAL X ETF 랩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DJSI world) 10년 연속 선정

주관: S&P Global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랩계약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랩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랩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Global X ETF랩계약의 수수료는 일반형 연2.4%(분기 0.6%후취), 혼합형 연1.2%(분기 0.3%후취), 성과보수 부분은 고객과 개별 합의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ETF 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배당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배당금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RP 운용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1-01468호 (2021.03.25~2022.03.24)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224호 (2021.12.09~2022.12.08)





Transparent 투명하고

Generalized 투자하기 쉽고

TIGER

Innovative

혁신적이며

Efficient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Reliable



그래서, 이름이

TIGERETF

TIGER ETF에 투자한다는 건,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쉽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것!
ETF를 대표하는 이름, TIGER ETF로 투자에 앞서가세요.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963호 (2021.10.27~2022.10.26)

C O N T E N T S

COVER STORY

IRP 전성시대 온다

〈개인형 퇴직연금〉

04



06 IRP는 어떻게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무기가 되는가?

10 아직에서 퇴직까지 IRP 관리 포인트10
이직할 때, 운용 및 관리할 때, 연금받을 때

GLOBAL SENIOR STORY

시니어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28



28 **일본** '자유와 미래기술' 중시하는 젊은 층 vs '질서와 유지' 선호하는 중장년층, 100세 시대 공존의 열쇠는?

日 리서치 회사 1만 명 인식 조사
'2040 실현가능한 미래 모습' 분석

32



32 **독일** 시니어 문제는 시니어가 푼다
팔 걷어붙인 '독일은퇴자협회'

실용정보 제공부터 법무대행까지 전방위 지원

36



36 **미국** "인생 후반기 함께할 반려동물 입양 도와드려요"

노인의 노령견·노령묘 입양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기관들



22



38



46

- 18 **SPECIAL INTERVIEW**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젊어서 ‘건강 투자’ 해야 늙어도 늙지 않습니다”
- 22 **FOCUS** 노후자금 운용의 기술
노후자금 투자, 넣고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
- 38 **ASSET RESET** ETF, 이것이 궁금하다
월세 주는 ETF도 있나요?
- 42 **CARTOON** 홍승우의 올드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 46 **INVESTMENT DIARY** 퇴직연금 족집게 문답
퇴직연금 제도 바뀌면 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48 **INSURANCE TECH** 보험 길라잡이
건강검진에서 낭증을 발견했는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 50 **ESSAY** 난 그러지 말아야지
딸은 엄마를 닮아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아간다
- 54 **BOOK & INSIGHT** 전영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인구 변화 이겨낼 주식’을 찾자



SPRING 2022

Vol.06

발행처 (주)엑셀런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302호(여의도동, 센터빌딩)
Tel 02-2038-8980
Fax 02-3273-8981

발행인 윤길주
편집인 안성모
아트디렉터 이민자
사진 이원근, 강현욱
교열 중앙일보어문연구소
이미지 gettyimagesbank·뉴스스·연합뉴스
엑셀런스코리아DB·Shutterstock

등록일 2020년 11월 30일
등록번호 영등포 사 00056
간별 개간(연 4회)
발행일 2022년 3월 11일
출력·인쇄 삼화인쇄주식회사(02-850-0850)

투자와 연금

정기구독 안내

<투자와 연금>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 매거진입니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및 연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료(연 4회) 1만9000원(배송비 포함)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2038-8980

insight@insightkorea.co.kr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0-911582

예금주: (주)엑셀런스코리아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VER STORY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전성시대 온다



■ 연말정산 때 어떻게든 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애쓰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옮기며 퇴직금 수령 방법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했던 퇴직자라면, 퇴직금을 투자하면서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은퇴자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미 IRP에 가입한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가 IRP는 절세와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퇴직자들 사이에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IRP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 7월 무렵이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려는 이들을 위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왔다.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해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IRP 적립금은 2021년 9월 말 4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IRP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앞으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도록 했고, ISA 만기자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해외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해외펀드(ETF) 투자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IRP를 바라보기 시작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IRP를 모르고는 절세도, 노후준비도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금부터 IRP가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내 삶에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해보도록 하자. **M**



IRP는 어떻게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무기가 되는가?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한다. 다만 제대로 알아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를 생각해 보자.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장수의 손에 쥐어 준다고 한들 장수가 무기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IRP도 마찬가지다. IRP가 절세와 노후 준비 수단으로 뛰어난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IRP가 언제 어떻게 내 삶에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자.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IRP에 가입해 매년 7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IRP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세액공제”라는 답을 가장 많이 듣는다. 금융상품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커서 그런 듯하다.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금융상품에는 IRP 말고 연금저축도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한 해 많아야 400만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나마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한 해 1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둘을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후대비를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 보자. 700만원을 전부 IRP에 저축하면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700만원을 모두 연금저축에 적립하면 400만원(고소득자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적어도 300만원(고소득자 400만원) 이상을 IRP에 적립해야 한다.

연간 700만원을 IRP에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에 700만원을 저축하면 납부한 소득세에서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진다. 따라서 700만원을 저축하면 납부한 소득세에서 92만4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들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교사도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IRP 가입 금액은 3조6344억원, 공무원 등의 IRP 가입금액은 1조1767억원에 달한다.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4조 8111억원이 늘었다.

직장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 IRP에 모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10개월이고, 정규직 근로자는 8년이었다. 처음 취업해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가. 문제는 퇴직금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이런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퇴직금 2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홍길동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7%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저런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 은퇴한 다음 노후생활비 재원이 모자랄 것은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IRP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에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는 걸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장기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득이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IRP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혹시 IRP를 중도해지했을 때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금 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홍길동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7% 세율을 적

IRP에서는 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와 해외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즉각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들 상품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해 과세한다.

용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여러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모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홍길동 씨가 A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원(퇴직소득세 300만원)과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원(퇴직소득세 1300만원)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홍길동씨가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전부 합쳐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한다. 홍길동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는 1600만원이다. 홍길동씨의 퇴직소득세율은 8%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10년 차까지는 5.6%, 11년 차부터는 4.8%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외 펀드와 해외 ETF 투자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금이 됐든,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적립한 돈이 됐든 IRP에 쌓인 적립금을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된다. IRP 가입자는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들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수입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이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55세 이전에는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이때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일까? 해외 펀드와 해외 ETF 투자자들이 이 같은 절세효과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IRP를 이용하기도 한다. IRP에서는 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와 해외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즉각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들 상품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해 과세한다. 게다가 운용 기간 중 발생한 매매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해 주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일까? 해외 펀드와 해외 ETF 투자자들이 이 같은 절세효과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IRP를 이용하기도 한다. IRP에서는 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와 해외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즉각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들 상품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해 과세한다. 게다가 운용 기간 중 발생한 매매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해 주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은퇴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수령했지만, 퇴직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다. 이때 연금소득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IRP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명예퇴직이나 장기근속자가 받은 금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이 얼마가 됐든 건강보험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M**

퇴직금 이체, 연금저축으로 할까 IRP로 할까

올해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을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체해야 한다. 올해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IRP 의무 이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때는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수료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외에 자산 운용과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IRP 계좌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다.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수료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둘째,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살핀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된다. 따라서 IRP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

유에 해당되면 일부 인출할 수 있다.

셋째,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펀드와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에 IRP 가입자는 이들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안 된다.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하다.

넷째,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적격 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압류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여는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금여는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금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M**

이직에서 퇴직까지 IRP 관리 포인트 10

Editor 미래셋투자자와연금센터 윤치선 연구위원 · 이동근 연구원

IRP와 관련해 사람들마다 궁금해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고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이직할 때



이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가요?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다. 퇴직연계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가 IRP에 가입한 금액은 2조7179억원 정도다. 전체 IRP 적립금액 35조271억원의 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IRP에 입금한 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할 수 없다.

IRP는 법에서 허용한 사유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꼭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이다.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딱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찾아도 상관없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르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요양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그러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 등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돈을 찾으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다. 한편 요양 목적으로 돈을 찾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만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주고, 그 이상 인출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니 주의해야 한다.

요양 사유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한도

= 200만원 + 지출한 의료비 + 간병비 +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 및 적용 세율

구 분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제외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이직할 때
QA 01~02

운용 및 관리할 때
QA 03~07

연금받을 때
QA 08~10



Q02 세액공제 받으려고 만들어 둔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출하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할 경우 세율은 자금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퇴직급여 수령과 상관없이 절세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할 때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IRP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가 퇴직급여를 기존 IRP 계좌에 입금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으려면 퇴직급여 뿐 아니라 스스로 넣었던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다 찾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P7 표 참조)

따라서 퇴직급여를 입금했다가 나중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는 기존에 계좌를 개설했던 금융기관과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은 상황이라면 인출 순서에 유의하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은 상황에서 자금을 부득이하게 인출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경우라면 계산은 간단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분인출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어떤 사람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IRP 계좌에서 자금을 부분인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출 순서다. 어떤 돈이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IRP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제일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이다.

IRP 계좌의 자금 인출 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퇴직급여 →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이란 IRP에 가입자가 직접 입금한 돈 중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돈을 입금했거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돈에 대해서는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만 연금소득세 부과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16.5%의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퇴직급여까지만 인출하는 것이 좋다.





Q04 IRP에 넣은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죠? 해외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나요?

예금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TDF 등 알아서 운용해 주는 자산배분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업종별 투자 가능 IRP 실적배당 상품

구분	특징	투자 가능 여부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일반 펀드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	○	○	○	
실적배당 보험	일반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보험	×	○	×	
거래소 매매 상품	ETF · ETN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펀드 및 상장 파생결합 증권	○	×	△
	리츠(REITs)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간접투자 상품	○	×	×
	인프라 펀드	국내외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	×	×
자산배분 상품	자산배분 펀드	자산배분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펀드. 세부 운용방식에 따라 일반 자산배분 펀드, TDF, TIF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	○	○
	MP보험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산배분 상품	×	○	×

※일부 은행의 경우 IRP에서 ETF 매매 가능.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고 신탁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예금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금리형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은 물론이고 펀드, ETF, 리츠(REITs), 자산배분 상품 등 다양한 실적배당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IRP 가입 금융회사의 업종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는 전 금융사에서 다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ETF, 리츠(REITs) 등 주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사만 가능하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IRP 계좌의 ETF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실시간 매매가 안 되고 신탁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펀드 및 ETF를 전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나 ETF 중에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IRP에서 가입할 수 없다. 달러 선물 ETF, 원자재 펀드 및 ETF 등이 대표적인 예다. ETF의 경우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도 투자할 수 없다. 두 ETF 모두 빠르게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수인 IRP 계좌에서는 매매를

IRP 운용 제한

편입 가능 비율	대상 상품 및 특징
100%	- 원리금 보장 상품 : 예 · 적금, 원리금 보장형 보험(GIC), 증권사 ELB 등 - 펀드 : 조건에 부합하는 TDF(Target Date Fund),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등
70%	- 편입 가능 비율이 100%인 위의 상품이 아닌 경우 전체 자산의 70%까지 편입 가능 예) 주식형 펀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리츠(REITs) 등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다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TDF 등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70%까지 한도를 채워서 위험자산을 매입한 이후 자산 가격이 상승해 위험자산 비율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위험자산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위험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DF 등 자산배분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고 싶는데 투자 역량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 주는 자산배분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유형의 상품으로는 TDF(Target Date Fund)가 대표적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Target Date)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 곡선에 따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또한 위험자산들 간의 자산배분도 시장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해준다. 한마디로 완전 자동운용 펀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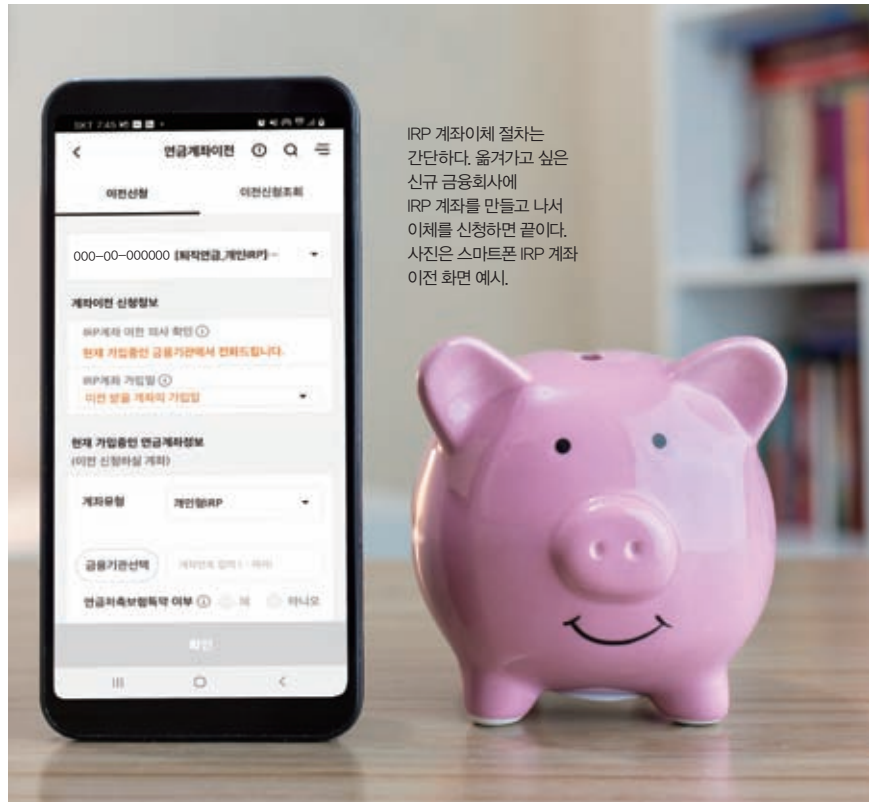
TDF의 또 하나의 장점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TDF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IRP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2018년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TDF에 한해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즉 IRP 계좌 전체 자산으로 TDF만 전부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IRP를 운용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 하나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70%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다. TDF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Q05 IRP 가입 금융회사에서 원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원하는 금융상품이 있는 금융회사로 IRP계좌를 옮기면 됩니다.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되고, 일부 회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IRP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현재 IRP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원하는 금융상품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아야 한다.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면 판매회사 정보가 나온다.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 회사의 IRP 관련 서비스와 수수료 수준 등을 알아보고 난 후 최종적으로 옮길 회사를 결정하면 된다.

IRP 계좌이체 절차는 간단하다. 옮겨가고 싶은 신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체를 신청하면 끝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계좌 개설부터 이체 신청까지 15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 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련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면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체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체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입했던 상품들이 환매돼 신규 금융회사로 현금이 이체된다. 이체 완료 이후 신규 금융회사에서 원했던 금융상품을 매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IRP 계좌이체 절차는 간단하다. 옮겨가고 싶은 신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체를 신청하면 끝이다. 사진은 스마트폰 IRP 계좌 이전 화면 예시.

Q06 IRP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 0~0.51% 정도며, 금융회사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있다. 이는 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해줘야 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계좌 단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로 나뉘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두 수수료를 합친 수치를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s://100lifeplan.fss.or.kr>)에 들어가서 '연금상품 비교공사-퇴직연금-맞춤형 수수료 비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별 IRP 수수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금융회사 간 IRP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말 기준 증권사는 0.00~0.30%, 은행은 0.18~0.30%, 생명보험사들은 0.21~0.51%, 손해보험사는 0.16~0.46% 정도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별로 수수료율은 다 다르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Q07 ISA 만기자금을 IRP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체하면 어떤 점이 좋죠?

A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ISA 적립금을 IRP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가입 후 3년 경과 시 ISA 적립금의 연금계좌 이체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생겼으며, 납입 한도도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해진 점과,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 점도 주요 변화들이다. 그러나 노후 대비를 위해 ISA에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ISA 적립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게 해준 점일 것이다.

현재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사람들은 ISA 적립금을 IRP 및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원래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입한도와 상관없이 ISA 적립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이체할 수 있다. 또한 ISA에 들어 있는 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자금 중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로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는 어떤 사람이 ISA 만기자금 5000만원을 IRP 계좌에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그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5000만원의 10%는 500만원이다. 이는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무가입 기간과 만기는 다르다는 점이다. 의

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옮기기 위한 조건은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는지 만기 여부와는 상관없다. 즉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굳이 만기까지 기다려서 자금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후 ISA를 재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3년마다 반복적으로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다.

ISA 적립금을 IRP로 이체한 후 인출하면 세금을 덜 낸다

ISA 적립금을 IRP로 이체할 경우 인출할 때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 가입한 사람이 A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후 순소득은 300만원(=400만원-1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셈이다.

ISA 주요 제도 변화(2020~2021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입 자격	-소득 있는 자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 유무 상관없음) *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가입 가능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의무 가입 기간	-일반형 : 5년 -서민형, 청년형, 농어민 : 3년	-3년(유형 상관없음) -의무가입 기간 종료 시 해지 후 재가입 가능 -만기 연장 가능
편입 가능 금융상품	-펀드, ETF, 리츠(REITs), 파생결합 증권, 예금성 상품	-펀드, ETF, 리츠(REITs), 파생결합 증권, 예금성 상품 -국내 상장 주식(투자중개형 ISA만 가능)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불가능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 -의무가입 기간 종료 후 해지 및 재가입 시 납입한도 재생성
연금계좌 이체	-불가능	-의무가입 기간 종료 시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로 이체 가능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Q08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장점은 뭔가요?

A 일시금으로 찾는 것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P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이다. 이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인출하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어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돈은 적립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이다. 원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찾는 건데,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흩어져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정보가 누락돼 연금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IRP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60~70%만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내면 된다. 김미래씨가 IRP 계좌에 1억원의 퇴직급여를 넣어줬다고 가정하자. 과거 퇴직급여를 받을 때 산정된 퇴직소득세는 1000만원이었다. 김미래씨가 2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므로, 세율은 10%(=1000만원/1억원)가 된다. 따라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매년 35만원(=500만원×10%×70%)을 내면 된다.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는 이 세금을 제한 465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더 낮아진다. 따라서 김미래씨가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매년 30만원(=500만원×10%×60%)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은 3.3~5.5%다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다만 세율은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다르다. 수령자

연금수령 한도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을 따라 산출한다

$$\left. \begin{array}{l} \text{(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 \text{연금계좌 평가액} \\ \text{연금수령 한도} = \frac{\quad}{11-\text{연금수령 연차}} \times 120\% \end{array} \right\}$$

예시

1년차	연금수령 개시 신청 시 계좌 평가액 1억원 → 연금수령 한도 = $\frac{1\text{억}}{11-1} \times 120\% = 1200\text{만원}$
2년차	연말까지 별도 손익 없이 1200만원 인출 → 연금수령 한도 = $\frac{8800\text{만}}{11-2} \times 120\% = \text{약 } 1173\text{만원}$

나이가 55~69세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70~79세인 경우 4.4%, 80세부터는 3.3%로 과세된다. 단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먼저 수령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IRP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단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는 면제).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수령 한도다. 이 한도를 넘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미래씨의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연금수령 첫 해에 1500만원을 인출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될까? 먼저 연금수령 한도부터 계산해 보자.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또는 매해 초의 IRP 계좌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거기에 120%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박미래씨의 연금수령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원(=1억원/(11-1)×120%)이 된다. 박미래씨가 찾은 금액이 1500만원이므로 1200만원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300만원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Q09 연금받는 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A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을 택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 이상으로 인출한 부분은 자금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혹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를 운용하는 기간에는 부분인출이 힘들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보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비정기 연금 인출이란 매달 받는 연금액 및 연금수령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의 인출 계획에 맞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달은 100만원, 다음 달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부분은 자금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은 현재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마다 연금 인출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기 연금 인출을 택하고 싶다면 미리 본인이 IRP에 가입한 회사가 해당 방식을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목돈 인출 가능성이 높고 IRP 가입 금융회사가 비정기 연금 인출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연금 인출이 개시되기 전에 비정기 연금 인출을 지원해 주는 금융회사로 IRP를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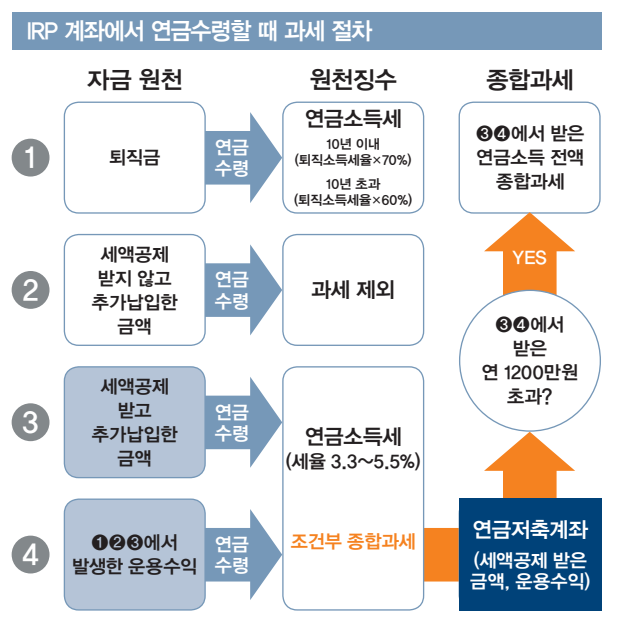
Q10 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인상도 걱정됩니다

A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연금 재원에 따라 다르다. IRP에 쌓은 돈은 그 원천에 따라 ①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②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③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 ④퇴직급여와 추가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는 상관없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이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한편 자금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혹은 운용수익이라 하더라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한도가 3000만원인 상황에서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5000만원을 인출한다면, 3000만원은 종합과세되고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 2000만원은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되는 것이다.

IRP에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IRP는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인출한 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M**



“젊어서 ‘건강 투자’ 해야 늙어도 늙지 않습니다”

김광일 교수가 들려주는 백세시대 건강한 삶 이야기

Editor 노철중 인사이트코리아 기자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께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2011년(80.62세)보다 3년가량 늘었다. 앞으로도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아진다. 병원을 찾는 횟수, 복용해야 할 약이 늘어난다. 자신에게 찾아온 신체적 변화들에 대해 노인 환자들은 ‘나이 탓이려나’ 하며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난 여전히 젊

다”며 스스로를 관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광일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늙어도 늙지 않는 법>을 통해 노인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인성 질병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을 받았다. 200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개원하며 노인의료센터가 설립되자 당시 개척 단계나 다름없던 노인병학으로 전공을 과감히 바꿨다. 16년여 동안 노인환자 맞춤형 진료를 위해 애써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의료 전문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아픈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일반 진

료과를 찾는다. ‘노인병내과’라는 진료 클리닉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선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는 데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노인병’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노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게 ‘노인병학’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노인들은 복합적으로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 여러 진료과를 통합한 진료시스템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노인포괄평가’를 개발했고, 노인의료센터에서 복합적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노쇠평가 및 협진 모델 개발, 혈관 노화와 노인성 질병 연구, 노인병학 전문 의료진 양성 등 노인의학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외에 전남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등도 노인전문 진료과를 운영 중이다.

“노인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투자와연금센터〉는 노인병과 노인의학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광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중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병, 노인병내과, 노인의학 등은 아직 낯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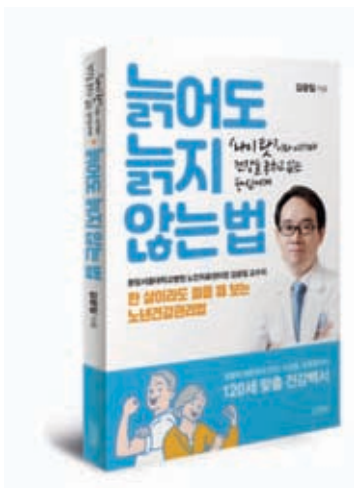
김 교수는 “노인병은 영어 ‘Geriatrics’를 의미하는 단어로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학회에서

인정받은 대한노인병학회가 1968년에 창립됐으니 역사가 꽤 오래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인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서구 의학에서 노인병학 또는 노인의학은 1906년 코렌체 프스키가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고 노화 과정을 알면 노인들의 질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노년의학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늙어도 늙지 않는 법
김광일 지음
김영사 출판

노인들은 복합적으로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 여러 진료과를 통합한 진료시스템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노인포괄평가’를 개발했고, 노인의료센터에서 복합적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노쇠평가 및 협진 모델 개발, 혈관 노화와 노인성 질병 연구, 노인병학 전문 의료진 양성 등 노인의학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요즘 60대는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정의도 변했다. 김 교수는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까.

“노인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상태를 반영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65세 기준은 100여 년 전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현재 평균수명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적절한 기준은 아니다. 노인의학에서는 75세 이상에서부터 노화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노인학적 특성을 고려한 의학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는 노인병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노인 전문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으면 좋을까.

“치매, 예방 가능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노인병내과는 노인에게 흔한 복합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노쇠, 근감소증 등 노인에게만 주로 문제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 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다니고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거나 복용 약물 수가 많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특이적인 증상이 해결되지 않지만 기존 질병 위주의 검사와 진료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내원하면 포괄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진료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 다면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령 환자 중 복합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하고, 기능이 저하돼 있거나 기능저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예정돼 있는 고령

의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평가하고 진료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는 주로 인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분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수행하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검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게 ‘노인포괄평가’다. 김 교수는 이를 직접 개발했다.

“노인포괄평가는 노인 환자를 질병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기능적·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포함한 문제항목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는 도구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차츰 다른 병원에서도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노인병이 존재하면 노인병 치료제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제약사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찾아봐도 노인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병내과에서만 특별히 처방되는 약이 있을까.

“30~40년 전에 수행된 암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표적항암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듯이 노화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고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 고혈압 치료제인 로자르탄 등이 대표적인 약제다.”

김 교수의 저서 <늙어도 늙지 않는 법>은 TV·인터넷·유튜

“노인포괄평가는 노인 환자를 질병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기능적·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포함한 문제 항목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는 도구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차츰 다른 병원에서도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를 믿고 고생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노인 환자들을 위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인지 의학 지식을 담은 책인데도 생각보다 쉽게 읽힌다. 책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오해들, 노년에 걸리는 7대 질병 예방법,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 지식, 노년을 위협하는 생활 속의 위험 등 노인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담았다.

치매를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는 대목은 흥미를 끈다. 이유는 영국·미국 등에서 최근 치매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고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늙어도 늙지 않는 법〉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읽어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담지 못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건강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비법이 있다기보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을 꾸준히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노후 준비는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는 말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젊을 때부터 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년 이후의 건강은 젊었을 때 건강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젊었을 때 건강에 악영향을 끼

치는 생활습관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년 시기에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투자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늙어도 늙지 않는 법〉에서는 부록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는 30~50대에게도 요양원·요양병원은 관심의 대상이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요양원은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김 교수는 질병에 맞게 시설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국내 요양시설은 간혹 공포영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인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다.

“미디어에서 극단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3차 의료기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노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는 곳도 많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고 미리 방문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김 교수는 시니어 건강·생활 전문 매체 ‘백세시대’의 금요 칼럼에서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급성기 진료-회복기 진료-만성기 진료로 세분화하고 상호 간 유기적인 연계가 수행돼야 한다. 또한 질병 위주의 접근이 아닌 기능 위주의 포괄적인 평가와 다면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진료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M**



노후자금 투자, 넣고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상무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낮아진 금리와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 은퇴자들은 노후자금을 더 이상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자금 수명을 늘리기 위해 이제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됐다. 노후 투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을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시퀀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딸에게 물었더니 “나쁜 소식부터 듣겠다”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서 기준을 낮춰 두면 나중에 듣는 좋은 소식이 더 좋게 들린다”고 했다. 이유가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해도 모두가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후자금 투자, ‘수익률’만큼 ‘순서’도 중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파라오의 꿈과 요셉에 관

한 얘기를 살펴보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살찐 암소 일곱마리와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가 나오는 꿈을 꾸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요셉은 살찐 암소 일곱 마리는 7년 동안 이어지는 대풍년을,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는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 작황이 불안정했던 당시 이집트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성경 전문가에 따르면, 파라오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중 어느 것을 먼저 겪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파라오는 7년 풍년을 먼저 겪기로 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파라오는 미래에 다가올 7년의 가뭄을 견뎌낼 만큼 충분한 곡식을 저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7년 흉년을 먼저 맞았다면 어땠을까.

파라오의 꿈과 관련된 일화는 은퇴한 다음 노후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은유가 될 수 있다.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는 노후자금을 예·적금에 맡겨 두고 빼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그럴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보건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은퇴생활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퇴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노후자금의 수명을 늘리려면 저축에서 투자로 노후자금의 서식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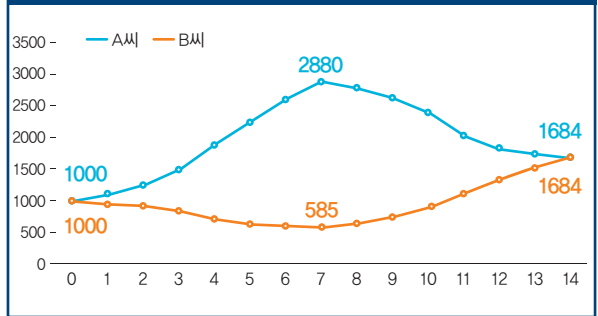
01

중도에 투자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때

수익률 순서에 따라 은퇴자 A씨와 B씨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앞서 파라오의 사례처럼 투자 기간은 14년이라고 하자. 은퇴할 당시 A씨와 B씨가 보유한 노후자금은 1000만원이다. 먼저 A씨는 처음 7년 동안은 수익을 내고 이어진 7년 동안은 손실을 봤다. 반대로 B씨는 처음 7년 동안 손실을 보고 나중 7년 동안은 이익을 봤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4년 동안 B씨는 A씨와 정반대 순서로 수익률을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얻은 수익률의 순서는 정반대지만, 투자 기간 동안 얻은 산술평균 수익률(연 5%)과 기하평균 수익률(연 3.8%)은 동일하다.

그러면 14년이 지난 다음 A씨와 B씨 중 어느 쪽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이 남아 있을까. 전반기 7년 동안 수익을 냈던 A씨의 계좌일까, 아니면 후반기 7년 동안 수익이 났던 B씨의 계좌일까. 먼저 A씨 계좌부터 살펴보자. A씨 계좌의 잔고는 처음 1000만원으로 시작해 7년이 지났을 때 288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계좌 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해 투자기간이 끝났을 때는 1684만원이 남는다.

A씨와 B씨가 중도에 투자자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때 단위: 만원



B씨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7년 동안 연속해서 손실을 본다. 7년 차가 끝났을 무렵 B씨의 계좌에는 585만원이 남아 있다. 8년 차부터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계좌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해 14년 차가 끝났을 때 계좌에는 1684만원이 남게 된다. 중간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참고 이겨내면 결국에는 A씨와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된다.

A씨와 B씨가 14년 동안 얻은 수익률

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산술평균	기하평균
A씨	10	15	20	25	20	15	10	-3	-5	-10	-15	-10	-5	-3	5	3.8
B씨	-3	-5	-10	-15	-10	-5	-3	10	15	20	25	20	15	10	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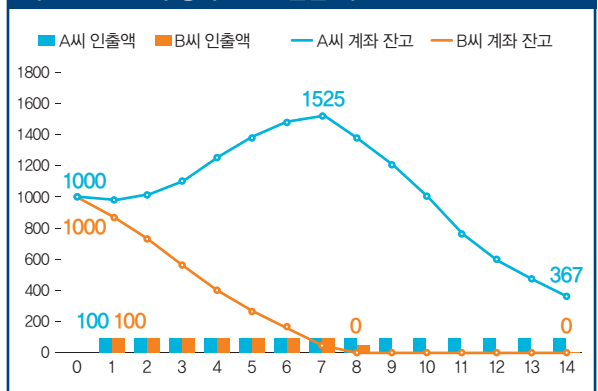
02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면 어떨까

투자자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때는 수익률 순서와 무관하게 연평균 수익률이 같으면 투자 기간 말에 잔고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하려면 투자자금 중 일부를 빼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자금 중 일부를 빼서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익률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A씨와 B씨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A씨와 B씨가 매년 초에 100만원을 빼서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 보자.

A씨는 첫째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떼어 생활비로 쓰고 900만원을 투자한다. 첫째 10% 수익을 내서 연말 잔고는 990만원이 된다. 두 번째 해가 시작될 때 다시 100만원을 빼서 생활비로 쓰고 890만원을 투자한다. 이번에는 15% 수익을 내서 연말에 계좌 잔고가 1024만원으로 불어난다.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7년 차에 1525만원을 정점으로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4년 뒤에는

매년 100만원씩 정액으로 인출할 때 단위: 만원



367만원이 남는다.

B씨는 어떨까.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첫째에 100만원을 떼어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데다 -3%의 손실까지 입는 바람에 잔고가 87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계속해 손실을 보면서 생활비가 지 빠져 쓰면 계좌 잔고가 눈에 띄게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급기야 8년 차에는 잔고가 모자라 60만원만 인출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계좌 바닥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생활비를 꺼내 쓸 수 없다.

투자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A씨와 B씨가 같았다. 다만 수익

률을 맞이하는 순서가 달랐다. A씨는 전반부에 수익을 내고 후반부에 손실을 봤다. 반면에 B씨는 전반에 손실을 보고 후반에 수익을 냈다. 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쓰지 않을 때는 수익률의 순서가 잔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수익률 순서에 따라 계좌 잔고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 of return risk)'이라고 한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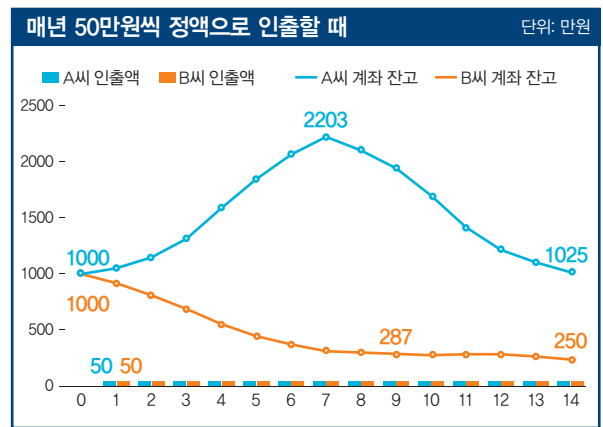
인출액 줄이면 노후자금 수명 늘어날까

투자를 하면서 생활비를 빼 써야 한다면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라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7년 풍년을 먼저 맞이하면 다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할 여유가 있다. 하지만 7년 흉년을 먼저 받으면 그럴 겨를이 없다. 은퇴자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은퇴생활 초기에 괜찮은 수익을 얻는 편이 혹독한 손실을 입는 쪽보다는 낫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파라오는 풍년과 흉년의 순서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지 몰라도, 은퇴자는 수익률 순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승장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락장을 먼저 맞닥뜨려야 할 때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인출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전에 비해 생활비를 절반만 쓴다고 해 보자. 매년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 인출하면 은퇴생활 도중에 파산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A씨는 투자기간 내내 원금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빼 쓸 수 있었다.

처음에 1000만원이었던 계좌 잔고가 상승장을 거치면서 7년 차에는 2203만원까지 불어난다. 이후 하락장을 맞아 잔고가 줄어들기는 해도 14년 차가 끝날 무렵에도 계좌에 원금보다 많은 돈이 남



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락장을 맞은 B씨다. B씨는 도중에 파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B씨의 계좌 잔고는 1000만원에서 시작해 투자기간 내내 줄어들기는 해도 14년 차에도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파산을 피하려고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듯이 무작정 생활비 규모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익률 순서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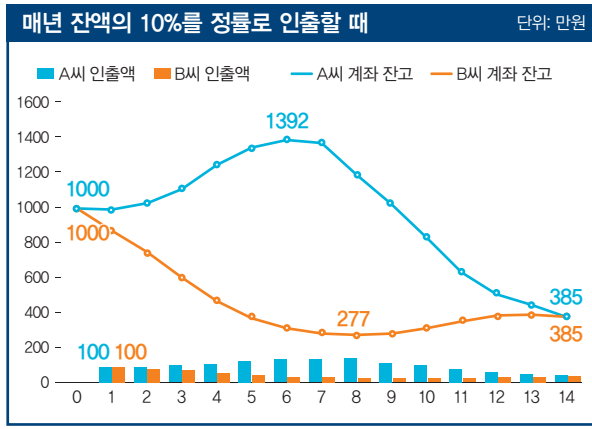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인출하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매년 일정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매년 초에 계좌 잔고에 남아 있는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꺼내 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설명한 방법을 '정액 인출'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정률 인출'이라고 한다. A씨와 B씨 모두 매년 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10%를 생활비로 꺼내 쓰면 어떻게 될까.

먼저 A씨부터 살펴보자. 첫해에는 은퇴자금 1000만원에서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꺼내 생활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900만원

을 투자해 10%의 수익을 내면, 연말에 계좌에는 990만원이 남는다. 2년 차에는 99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99만원을 생활비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8년 차까지는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늘어나다가 이후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인출액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4년 차 말에는 계좌에 385만원이 남는다.

같은 방법으로 B씨도 매년 초 계좌 잔고의 10%를 인출한다고 해 보자. B씨는 A씨와는 반대로 전반부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8년 차



까지는 계좌 잔고와 인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하지만 후반부에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계좌 잔고와 인출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기간이 끝날 때는 A씨와 마찬가지로 계좌에는 385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률 인출 방법을 택하면 매년 인출하는 금액을 조정해 나가면서 투자기간 도중에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정액 인출과 마찬가지로 정률 인출 방법에도 장단점이 있다. 정액 인출 방법을 택하면 매년 인출하는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인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중도에 파산할 수도 있다. 정률 인출 방법을 택하면 정해진 투자기간에 파산할 염려는 없다. 하지만 수익률에 따라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들쭉날쭉하는 게 문제다.

A씨의 경우 7년 차에는 139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14년 차에는 44만원밖에 빼 쓸 수 없다. B씨는 첫해에 100만원을 쓸 수 있지만 8년 차와 9년 차에는 28만원만 빼 쓸 수 있다. 그나마 은퇴생활 전반에 수익률이 좋아야 투자기간 내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A씨가 14년 동안 인출한 금액은 전부 합하면 1414만원이다. 한 해 평균 101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에 비해 B씨는 14년 동안 665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한 해 평균 47만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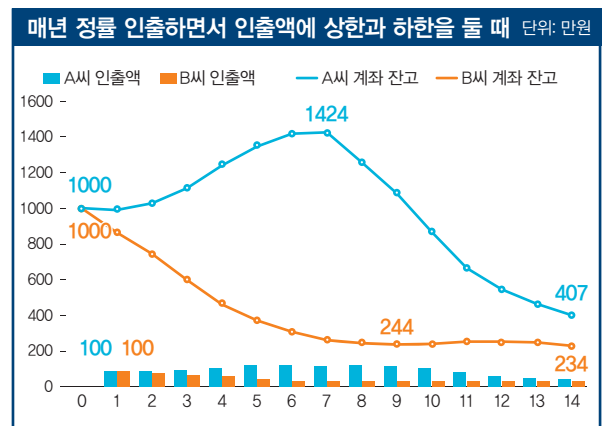
인출액에 상한과 하한을 두면 어떨까

수익률이 좋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지출을 하면서 흥청망청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은퇴 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출액에 상한을 둘 수도 있다. A씨의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연초에 잔액의 10%를 인출하되, 그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다.

투자기간 전반부에 높은 수익을 얻은 A씨는 5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상한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인출하게 된다. 투자기간이 종료됐을 때 잔고는 407만원으로, 상한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잔고 385만원보다 많다. 그만큼 은퇴 자산의 수명이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인출액의 하한을 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생계를 꾸리려면 기본생활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B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기본적으로 연초에 잔액의 10%를 인출하기로 하되, 인출액이 최소한 40만원은 넘도록 하는 것이다. B씨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내리 7년간 손실을 봤다. 인출액은 첫해 100만원에서 시작해 계속 줄어들더니 6년 차부터는 하한에 해당하는 4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최대 또는 최소 인출 한도를 좀 더 높게 설정하면 안 되느냐고 물



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자금이 소진되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상한과 하한을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하면, 아예 상한과 하한을 두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투자자금의 규모, 투자 기간, 인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과 하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M**



GLOBAL SENIOR STORY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문제는 인류 전체의 화두다.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어느 나라, 어디에서 '황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을까.
이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
<투자와 연금>은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시니어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일본 100세 시대 공존의 열쇠는?

독일 시니어 문제는 시니어가 푼다... 팔 걷어붙인 '독일은퇴자협회'

미국 "인생 후반기 함께할 반려동물 입양 도와드려요"



‘자유와 미래기술’ VS ‘질서와 유지’ 중시하는 젊은 층 선호하는 중장년층 100세 시대 공존의 열쇠는?

日 리서치 회사 1만 명 인식 조사...‘2040 실현가능한 미래 모습’ 분석

Editor 김웅철 매일경제TV 국장·전 매일경제 도쿄특파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

■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차이’는 존재해 왔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둘을 함께 부르는 ‘MZ세대. 신중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올드(Young old의 줄임말) 세대.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세대에 붙이는 라벨(label)이 더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라벨링이 특정 계층, 세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강화시키며 오히려 계층과 세대를 분단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인생 100세 시대’를 살게 된다. 100세 시대에는 같은 시기에 예전보다 더 많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만큼 세대 간 이해와 공존이 중요해진다. 세대 차, 제너레이션 갭(Generation gap)에 대한 해상도(解像度)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최근 일본에서 세대 간 이해도를 높여 주는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 소개한다. 각 세대가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 ‘미래상(未來像)’에 대해 다

각적인 분석이 시도됐다. 연구팀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미래상’이라고 강조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사회를 상상함으로써 각 세대가 원하는 변화와 원하지 않은 변화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리서치 회사 하쿠호도(博報堂)가 2022년 특별 기획으로 ‘2040년에 바라는 미래’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15세부터 69세까지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2040년에 실현될 것 같은 미래모습’ 120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실현됐으면 좋겠다’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 없다’로 답하게 했다.

이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일본의 유료 경제전문 온라인미디어 뉴스픽(NewsPicks)이 젊은 세대(25세 이하)와 중장년 세대(41세 이상) 간 가치관의 차이, 이른바 ‘세대 차’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1만 명 조사를 통해 본 젊은 세대 vs 중장년 세대, 가치관 차이의 전모’가 그것이다.

자유 중시하는 젊은 층 vs 질서 중시하는 중장년층

젊은 세대의 지지가 높았던 미래상부터 짚어보겠다. ‘미래의 쟁점 톱 20’은 젊은 세대가 바라는 미래상 가운데 중장년 세대와의 격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생각이 확연히 다른 대목을 느낄 수 있다. 남성 메이크업(化粧), 신체 성전환, 복수 국적 보유, 동성혼(同性婚) 등의 항목에서 젊은 세대는 큰 지지를, 중장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을 보였다. 세대 차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미래의 모습인 셈이다. 가상 일터, 가상자산 결제, 아바타 활용 등 이른바 가상

현실 세상을 말하는 '메타버스(Metaverse)'를 놓고도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가치관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의 미쓰야 마사히로(三矢正浩) 등 연구팀은 미래의 쟁점 20개 항목에서 드러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자유 ▶미래기술의 수용 ▶가상세계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세대 차의 첫 번째 특징인 '개인의 자유'에서는 사회적 의미의 성을 가리키는 '젠더(Gender)' 관련 항목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가치관이 가장 크게 갈렸다고 진단했다. '남성 메이크업'과 '신체 성전환' 등의 항목에 대해 젊은 세대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반면, 중장년 세대는 "그런 부류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데는 저항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장년 세대는 젊은 세대가 강조하는 '자유 중시'보다 '질서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남성 메이크업'에 대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자유 응답에서도 각 세대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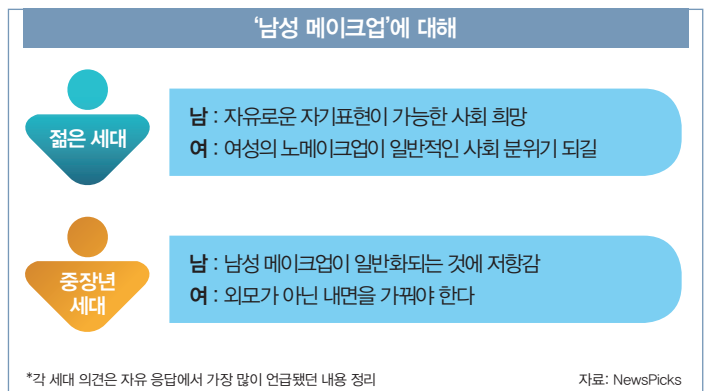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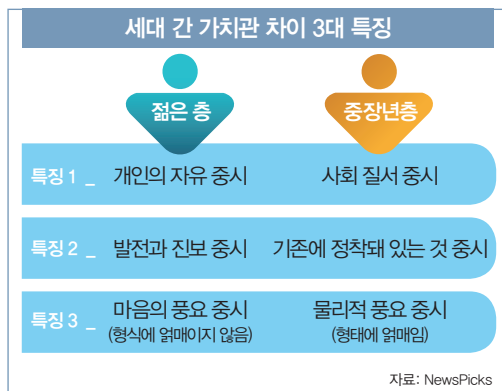
미래기술에 열린 마음 젊은 층 vs 저항감 보이는 중장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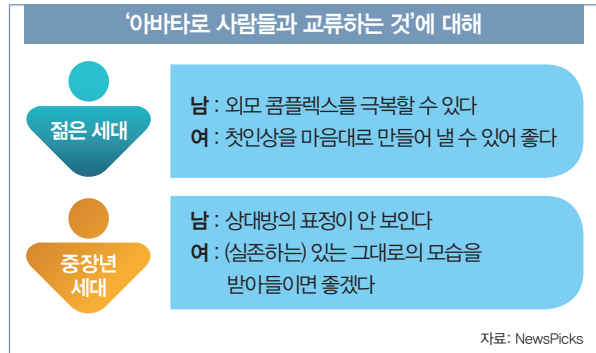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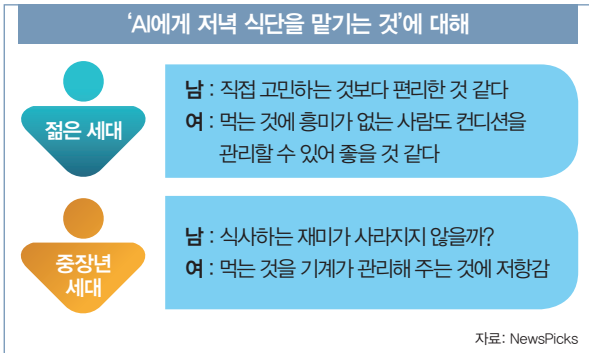
두 번째 세대 간 가치관의 쟁점인 '미래기술의 수용'에서, AI나 가상자산 등 진화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중장년 세대는 "디스토피아, 무섭다"는 불안을 호소한 반면,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는 "일단 경험해보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전기 자극으로 이상적인 맛을 추구한다'는 다소 엉뚱한 미래기술도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쿠호도 연구진은 분석했다.

세 번째 쟁점 '가상세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어떨까. 조사 결과 VR이나 가상공간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 중장년 세대일수록 '공허하다' '인간적인 감정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많은 반면, 온라

순위	'미래의 쟁점' 항목	실현 희망도 젊은 세대/중장년 세대	격차율
1	남성 메이크업	50%	41.8
2	신체 성전환		32.9
3	국적, 아이덴티티 복수 보유		26.3
4	얼굴, 신체 성형		25.5
5	동성혼(同性婚)		23.8
6	남성에 의한 임신·출산		21.8
7	가상공간에서의 일과 오락		19.9
8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		19.4
9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19.0
10	아바타로 사람 관계 맺기		18.6
11	특정 주소를 정하지 않고 생활		17.2
12	마트 온라인화가 대세로		16.8
13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의사(疑似)가족과 생활		15.8
14	이민, 난민의 적극적 수용		15.5
15	1인 세대가 40% 넘어		15.3
16	뉴스 광고가 개인 맞춤형으로		15.2
17	전기 자극으로 이상적인 맛을 느끼다		14.8
18	원하면 청소년 때부터 직업 보유		14.6
19	AI에게 식사 메뉴를 의뢰		14.3
20	학교 건물이 사라지고 전면 온라인 수업		13.5

*실현 희망도는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응답률을 산출
*젊은 층의 '실현 희망도'가 높고, 동시에 중장년층과의 격차가 큰 미래상 순서로 나열
*젊은 층 25세 이하, 중장년층 41세 이상 자료: NewsPicks





중장년 세대 지지율이 높은 미래상

단위:%

순위	'미래의 쟁점' 항목	실현 희망도 젊은 세대/중장년 세대	격차율
1	학교의 '월반(越班) 제도 도입	50%	18.1
2	기업의 수시 채용		15.3
3	사용한 물을 여과해 재사용		14.3
4	온라인 진료 및 수술		13.6
5	사회적 과제 실천 실적에 기업에 평가		11.6
6	지방 인구 분산		11.1

*중장년 세대 '실현 희망도'가 높고 젊은 세대와 격차가 큰 순으로 추출
 *젊은 층 25세 이하, 중장년층 41세 이상

자료: NewsPicks

전 세대가 바라는 미래상은?

단위:%

순위	'미래의 쟁점' 항목	실현 희망도 젊은 세대/중장년 세대	격차율
1	가게에서의 결제 자동화	50%	0.5
2	PC나 스마트폰의 초소형화		1.3
3	로봇에게 수송, 택배 일임		1.4
4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장거리 이동		1.4
5	부업의 일반화		1.7
6	쓰레기를 비료, 부품 소재로 완전 재활용		5.0
7	불용품(不用品)을 판매, 양도하는 순환형 생활		5.4
8	연령에 상관 없이 평생 교육		5.6
9	온라인 선거 투표		6.0
10	정부 주요직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6.2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모두에서 '실현 희망도'가 높고(70% 이상),
 세대 간 격차가 적은 미래상 추출
 *젊은 층 25세 이하, 중장년층 41세 이상

자료: NewsPicks

인 교류에 친숙한 젊은 세대는 메타버스도 현실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생활에 대해 젊은 세대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 교류하고 즐길 수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친밀한 접촉'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아바타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는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중장년 세대는 '상대방의 표정을 알 수 없다, 실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등 아바타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중장년 세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걸까. 120개 항목 가운데 중장년 세대에서 실현됐으면 하는 희망도가 높게 나타난 미래상을 보면 학교 '월반(越班)제도'와 기업의 수시채용 도입, 사용한 물의 재사용 등이었다. 하쿠호도 연구팀은 중장년 세대는 '월반제도나 '기업 수시채용' 등 특정 계층이 수혜를 받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특정 계층의 수혜에 대해 저항감을 드러낸 점이 특이했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의식과 관련해 중장년 세대가 더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 '쓰레기 전면 리사이클링' 등의 항목에서도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젊은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차 넘어 함께 지지하는 미래상은?

마지막으로 복수의 세대가 공존해야 하는 100세 시대에 세대 차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하쿠호도 연구팀은 전 세대가 희망하는 미래상 항목에서 그 방안을 찾았다. 분석 결과, 보수적인 것 같은 중장년 세대의 대다수가 '부업(副業)의 일상화' '온라인 투표 실시' '정부 주요직 남녀평등 기용' 등의 미래상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하쿠호도 연구팀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미래상을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화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

죄송합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의 구체적 결과는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검색해 보세요

전문가가 선정한 다양한 글로벌 펀드와 수익률의 차이, 직접 확인하세요.
변액보험을 알면 알수록, 미래에셋생명입니다.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등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1-01496 호 (2021-05-18)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시니어 문제는 시니어가 푼다 팔 걷어붙인 ‘독일은퇴자협회’

실용정보 제공부터 법무대행까지 전방위 지원

Editor 김수민 독일 베를린대학 박사과정

■ 독일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인구 전체의 22%에 달하는 1800만여 명에 이른다. 1980~90년대 이후 유럽의 고령화가 시작된 이래 다른 국가에 비해 초고령화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독일은 노인 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다져 왔다. 독일은 2050년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60세 이상에 이르고, 20세 이하 젊은 층은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노인 인구 증가를 부정적인 사회문제로만 다루고 있지 않다. 노인층을 사회의 주요 소비 동력으로 여기면서 젊은 세대를 교육할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미디어와 문화, 소비 트렌드, 스포츠와 레저산업, 학문과 정보의 영역은 급속히 늘어나는 시니어의 수요에 맞춰 변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퇴자협회(DSL) 설립과 역할

서독 본에 위치한 독일은퇴자협회(Deutschen Seniorenliga e.V., 약칭: DSL)는 1993년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 DSL은 설립 목표에서 독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과 함께 타협과 소통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DSL은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일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회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은퇴자협회는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을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시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DSL은 북유럽·영국·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세계 각국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 NGO, 뉴욕 고령화 관련 NGO 협의회(The NGO Committee on Ageing·NY)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스위스 장트갈렌(St. Gallen)에서 열리는 국제고령화문제포럼(World Demographic and Ageing Forum)에 참여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용적 정보 창구

독일은퇴자협회 회원이 되면 각국 시니어의 다양한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다. 개인 회원에게는 연간 30유로의 회비를 받는데, 이에 따른 혜택으로 매거진과 다양한 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은퇴자협회는 오직 사회적 기부와 자발적으로 구성된 1800여 명의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개개



독일은 노인 인구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다루고 있지 않다. 노인층을 사회의 주요 소비 동력으로 젊은 세대를 교육할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독일은퇴자협회는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젊은 층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보가 필수적이다. 독일은퇴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악티브(Aktiv)>에는 시니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과 함께 건강·직업·사회관계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협회 회원이면 <악티브> 매거진을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한 해 <악티브> 매거진은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지난해 말에 다룬 주요 기사에서는 백신 접종만큼이나 노인들에게 독감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질환 증상과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담겨 있다. 의학사전을 찾아봐야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진 예시가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이 충실히 반영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과 일상적인 행정업무, 은행업무 등 노인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와 사건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법률업무 대행 서비스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악티브>와 더불어 협회 홈페이지 자체가 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홈페이지 '정보 자료' 코너에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는 PDF 형식의 자료집이 여럿 올라와 있다. 책 한 권 분량에 해당하는 각 자료집에는 노인의 삶에 필요한 주제를 집약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DSL은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일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회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주제의 정보를 만나 볼 수 있다. ‘날씨와 건강’ ‘심장병 환자를 위한 백신 접종’ ‘디지털 익히기’ ‘방광염 환자들의 활동과 휴식’ ‘부동산-연금’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등이다. 또 회원이 아닌 개별 이용자들에게 자료집을 2부까지 인쇄 형태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협회 회원일 경우 원하는 부수만큼 인쇄본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 코너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날씨와 건강' '심장병 환자를 위한 백신 접종' '디지털 익히기' '방광염 환자들의 활동과 휴식' '부동산-연금'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등이다.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악티브>와 더불어 협회 홈페이지 자체가 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홈페이지 '정보 자료' 코너에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는 PDF 형식의 자료집이 여럿 올라와 있다. 책 한 권 분량에 해당하는 각 자료집에는 노인의 삶에 필요한 주제를 집약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독일은퇴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노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대항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는 시의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업무 상담소로, 주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특히 시니어들의

정치 참여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 노동청의 시니어 법률 대항 사무소(BAG LSV)와 협업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147건, 1996년에는 735건, 2004년에는 1000여 건의 시니어 법률 대항 업무를 진행했다.

독일은퇴자협회의 시니어 법률 대항 업무는 지방 도시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개 빈데글리트(Bindeglied)'라는 명칭의 프로젝트 일환이다.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의 정치 문제와 정치 참여를 돕는 '매개'는 독일 시민의 주요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일컬어진다. 업무의 주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의제 수집 역할:** 각 지역에 속한 시니어들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일과 요구 사항을 시의회 차원에서 수집한다.
2. **전달 역할:**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모인 시니어들의 요청 문제를 정부기관, 언론에 전달한다.
3. **감시자 역할:** 시니어들의 존엄과 권한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4. **조언자 역할:** 시니어들의 삶과 관련된 정치와 행정 업무에 관해 조언한다.

독일은퇴자협회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시니어의 삶에 깊이 연결돼 있는 법률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건강, 요양, 노인 지원, 노인 교육, 노인 차별, 범유럽 차원의 노인 권한 실행 등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조언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M**

#투자자연금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투자살롱
- 연금TALK TATLK
- 투자THE연금
- 우먼&머니톡
- 유튜브 세미나 and more!

“투자자연금TV” 구독은?

▶ NAVER TV 🔍 YouTube 🔍 에서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로 검색하세요!





Editor 이경원 텍사스주립대 교수

■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수의학이 발전한 덕분에 많은 개가 예전보다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 사랑이 각별한 미국인들도 노령견에 대해서는 다소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많은 사람이 반려견과 여러 해를 함께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어린 강아지의 입양을 원하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령견을 입양하는 것은 꺼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노령견을 간호하고 기르는 것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만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노령견 입양이 노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의 1년이 개의 7년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의 품종, 크기별로 늙는 속도가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견 품종은 소형견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 때문에 작은 품종의 경우 10~12세 정도에 노령견으로 간주되고, 크기가 큰 품종의 경우 6~7세에 노령견으로 분류된다.

개가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감

은 스트레스를 낮춰 주고, 외로움은 줄여 주고 사회생활의 기회는 늘려 주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춰 주는 등의 건강상 이점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반려견, 특히 어린 강아지의 입양을 꺼리는 노인도 많다. 하루에 여러 번 산책을 시켜주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를 대하기에 다소 벅찰 수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후에도 본인이 그 개를 계속 보살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노령견을 입양해 함께 노년을 보내려는 노인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기관들이 도시마다 생겨나고 있다.

곳곳에 위치한 노령견 입양 돕는 기관들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MN)에 에인절 애니멀 네트워크(Angel Animals Network)를 설립한 린다 앤더슨(Linda Anderson)은 “나이 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노인들은 활동적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비해 약간의 단점이 있음에도 반려동물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외로울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가 설립한 기관에서는 노인이 노령견을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령견의 건강 및 안정과 관련한 사료를 구매할 때나 정기검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

노령견을 입양해 기르고 있는 마조리(Marjorie)와 리처드(Richard) 부부는 은퇴 후 노령견 보니(Bonnie)를 입양했다고 한다. “은퇴 후 외출이 줄어들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둘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보니를 입양하게 됐고, 삶이 보다 윤택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보니를 데리고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보니가 요양원에서 지내는 다른 노인들과 직원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텍사스 동물보호리그 봉사활동자가 노령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료: Animal Defense League of Texas)



“인생 후반기 함께할 반려동물 입양 도와드려요”

노인의 노령견·노령묘 입양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기관들

노인이 노령견을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령견의 건강·안정과 관련한 사료를 구매할 때나 정기검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



노인 반려동물 재단(Pets for the Elderly Foundation)은 노인들을 위해 7만8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을 지원한다. 이 재단은 미국 전역의 34개 주에 54개의 동물보호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무료 반려동물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 전 비용과 수의 검진, 중성화 수술 등의 비용을 지원해 노인들이 고령이 된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노령견에게 주는 애정,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와

텍사스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의 가장 크고 오래된 텍사스 동물 보호리그(Animal Defense League of Texas)는 노인들이 노령 고양이와 개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근래에 가동했다. 노인을 위한 노령견(Seniors for Seniors) 프로그램은 7세 이상 고령 고양이와 개를 65세 이상 노인과 맺어줘 노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텍사스 동물보호리그에서 일하는 매건(Meghan)은 이같이 이야기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양이나 개들은 이미 혼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요. 나이 많은 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적시에 입양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안락사의 대상이 됩니다. 노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웰빙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노령묘·노령견을 입양해 주시는 게 동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텍사스 동물보호리그는 시설 내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을

“은퇴 후 외출이 줄어들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들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보니를 입양하게 됐고, 삶이 보다 윤택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보니를 데리고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보니가 요양원에서 지내는 다른 노인들과 직원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산책시키거나 음식을 챙겨 주는 일 등을 돕는 봉사활동자를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동물과 교류하고, 동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은퇴자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많은 봉사활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씩 시설을 방문해 사랑이 필요한 노령 동물들과 시간을 보낸다. 봉사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느낀다고 하니 동물과 사람이 함께 노년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M**

월세 주는 ETF도 있나요?

Editor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 본부장



몇 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강철수씨는 요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노후생활비를 더 늘리고 싶어서다. 마음 같아서는 임대료가 든든하게 잘 나오는 상가라도 하나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던 중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ETF에도 그런 상품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 투자자들은 주로 주식형 ETF에 익숙하다. 당연한 일이다. ETF의 상당수가 주식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ETF 자체가 개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되는 특징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일반적인 주식형 ETF 말고도 매우 다양한 ETF들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배당주 ETF, 리츠(REITs) ETF, 채권 ETF 등이다. 그리고 이런 ETF들을 묶어서 인컴형 ETF라 부르기도 한다. 인컴(Income)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소득, 수입 등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들을 '인컴'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컴형 ETF란 이러한 인컴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한다.

인컴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비

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리츠 ETF를 예로 들어 보자. 이 ETF는 주로 부동산 투자 간접상품인 리츠(REITs)를 편입한다. 그런데 리츠는 건물, 쇼핑시설,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또한 법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하게 돼 있다. 즉 과거에 얼마나 배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내가 받을 배당금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년 주당 500원 정도의 분배금을 꾸준히 투자자에게 지급해 온 리츠 ETF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이 ETF의 가격이 1만원이라면, 바로 매수할 경우 투자자는 향후 꾸준히 투자원금 대비 연 5%의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시장의 변화에도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 리츠 ETF의 가격이 -10% 하락해도 2년만 버티면 받은 현금 흐름만으로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인컴형 ETF인 고배당주 ETF, 리츠 ETF, 채권 ETF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주식 투자 매력과 높은 배당수익 함께 누리고 싶다면, 고배당주 ETF

대표적인 국내 고배당주 상품으로는 ARIRANG 고배당주 ETF가 있다. 이 ETF는 KOSPI200 중에서 예상 배당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다. 2021년 4.59%를 분배했다. 해외 고배당 상품으로는 KINDEX 미국고배당S&P ETF가 있다. 리츠를 제외한 미국 전체 상장 종목 중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종목 중에서 현금흐름부채비율, 자기자본수익률, 연배당수익률, 5년 배당성장률 등을 고려



리츠 ETF를 예로 들어 보자. 이 ETF는 주로 부동산 투자 간접상품인 리츠(REITs)를 편입한다. 그런데 리츠는 건물, 쇼핑시설,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또한 법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하게 돼 있다. 즉 과거에 얼마나 배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내가 받을 배당금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인컴형 ETF

구분	국내	해외
고배당주	ARIRANG 고배당주 ETF	KINDEX 미국고배당S&P ETF
리츠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	TIGER 미국 MSCI리츠(합성 H) ETF
채권	TIGER 단기채권 액티브 ETF	TIGER 미국 달러단기채권 액티브 ETF

해 100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배당성장과 퀄리티 주식의 교집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상장돼 올해 3% 수준의 분배금이 예상된다.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 받으려면, 리츠 ETF

대표적인 국내 리츠 ETF로 2019년 상장된 TIGER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가 있다. 국내 유일의 대체투자 ETF로 국내 상장 부동산, 리츠, 인프라 자산 등 12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직접투자와 비교해 보면 해당 ETF의 장점이 좀 더 명확해진다. 가장 큰 장점은 소액투자가 가

능하다는 점으로,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데 비해 이 ETF는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 직접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종합부동산

세와 같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되고, 분배금 등 배당수익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이다. 게다가 다양한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의 2021년 분배금은 5.17%로 시중금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해외 리츠 ETF로는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ETF가 있다.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2500개 리츠 중 배당 성장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수익이 높은 150개의 리

부동산 직접투자 vs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 투자

구분	개인 직접투자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투자금	목돈 필요	소액투자 가능
세금	양도세, 보유세 등	매매차익 : 비과세 분배금 수익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가능)
유동성	현금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원하는 시점에 매매 가능
분산투자	1~2개 부동산 집중	12개의 우량자산 분산
임대(분배)수익	다양	2021년 5.17%/ 2020년 5.27%
투자 전문성	개인 직접투자	전문가 운용
관리부담	공실 및 시설 관리	전문가 관리

츠를 골라 분산투자한다. 해외 리츠에 분산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2020년 3.39%, 2021년에는 2.96%를 분배했다.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채권 ETF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또한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채권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제 지표는 금리다. 금리 상승기에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 손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

을 최소화하고 싶은 채권투자자라면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단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국내 ETF로는 TIGER 단기채권 액티브 ETF가 있다. 국제, 통안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

달러 단기채권은 위기 시 전체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작용

달러 단기채권의 경우 금리 이외에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위기 국면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 위기 때마다 코스피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반대

TIGER 부동산인프라 고배당 ETF의 편입 자산

단위:%

리츠	형태	시가총액	자산	배당수익률	ETF 편입비중
맥쿼리인프라	특별자산군	5조4654억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80	16.66
롯데리츠	상장 리츠	1조2586억	3개 백화점, 4개 아울렛, 6개 마트, 1개 물류	6.10	15.13
ESR켄달스퀘어리츠	상장 리츠	1조2402억	부천·고양 등 12개 물류센터	4.30	14.91
SK리츠	상장 리츠	9394억	SK 서린빌딩(SK그룹 통합사옥), 클린에너지리츠(SK에너지(주) 116개 주주소)	4.50	11.29
제이알글로벌리츠	상장 리츠	8661억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7.10	10.41
코람코에너지리츠	상장 리츠	4337억	SK네트웍스 주주소 187개	5.20	5.21
신한알파리츠	상장 리츠	4213억	판교코래프톤, 용산더프라임, 대일빌딩, 신한타워, 트윈시티, 역삼타워	4.70	5.06
맵스리얼티1	상장 부동산	4178억	센터원, 미래에셋플레이스, 인터에셋홀딩스 등	5.35	5.02
이리츠코크랩	상장 리츠	3674억	뉴코아 야탑/일산/평촌 아울렛-분당/중계	7.00	4.42
디앤디플랫폼리츠	상장 리츠	3355억	세미콜론 문래, 백암 FASSTO 1센터, 글로벌 이커머스사 일본 허브 물류센터	5.60	4.03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상장 리츠	2652억	인천 스퀘어원, 용산 그랜드머큐어	6.50	3.19
NH올원리츠	상장 리츠	2135억	분당권역 랜드마크 오피스	6.00	2.57

*FnGuide, 2021. 12. 30 기준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로 크게 올랐다. 즉 위기 시 달러 자산이 있다면 주식가치 하락분을 달러가치 상승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라면 달러자산인 달러 단기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유사시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달러 보유를 고민할 때 생각하는 것은 달러 예금일 것이다. 그러나 달러 단기채권 ETF를 보유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 일단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장점은 만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달러 단기채권 ETF는 만기가 없어 재가입이나 만기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예금 대비 수익이 높은 편이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매력이다. 달러 예금 등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적용돼 수익률이 낮아지는 데 비해 달러 ETF는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단기채권 ETF인 TIGER 미국 달러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 오픈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러선물 ETF 등 파생상품과 달리 연금저축이나 IRP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다. **M**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또한 대표적인 인컴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채권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제 지표는 금리다. 금리 상승기에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 손실 가능성이 높다.

시장 하락 시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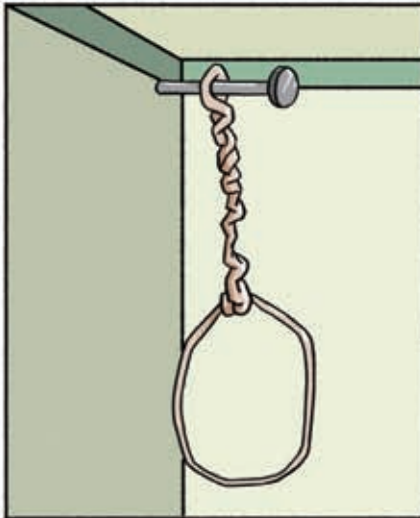
	2000년 닷컴버블 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나스닥100	-65.3%	-33.7%	-21.0%
USD/KRW 환율	16.8%	24.4%	7.9%

※주요 이슈 발생 후 하락 국면별 최저점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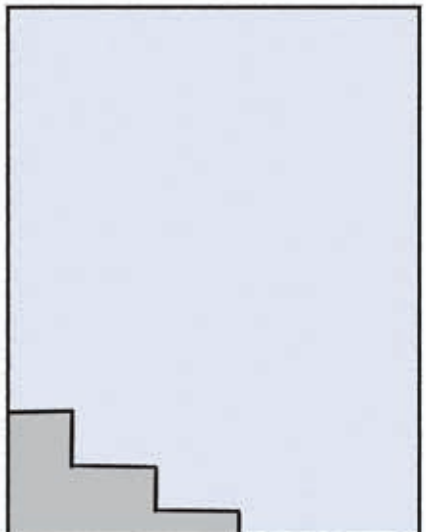
OLD

글·그림 - 홍승우









퇴직연금 제도 바뀌면 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ditor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연구원

Q 김미래씨는 2010년 1월 1일 입사한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1년 동안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로 바뀌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 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어렵고 회사를 퇴사할 때 받게 됩니다.

$$\left\{ \frac{\text{퇴직금 계산 방법}}{\text{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times 30 \times \text{근로일수}} \right\}$$

365

김미래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며 적합한 퇴직금을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로 전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 DC형 제도를 도입하기 전 과거 근로기간의 퇴직금도 전부 소급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미래씨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새로 가입한 DC형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셈이죠. 이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셋째, 과거 근로기간의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래씨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새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겠다고 하면, 2010~2015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시금으로 받고, 2016~2021년의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으로 적립, 회사가 부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는 간격은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DC형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 적립과 똑같이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상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 수준으로 산정하고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과거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겠다고 결정한 날 이전 1년입니다. 김미래씨가 퇴직금 전부를 DC형 계좌에 적립하기로 2021년 12월 1일에 결정했다면, 결정한 날 이전 1년은 즉,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M**

투자과 연금,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구독하세요!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유튜브 · 팟캐스트 · 페이스북 · 뉴스레터

01 유튜브

‘유튜브’ 접속
→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투자과연금TV’ 구독



02 팟캐스트

‘팟빵/podcast’ 앱 접속
→ ‘투자과연금’ 검색 및 구독



03 페이스북

‘페이스북’ 접속
→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04 뉴스레터

포털에서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팝업 클릭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발견했는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2021년 9월께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복부 CT에서 신장에 1cm 정도의 낭종이 발견됐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지에는 크기가 크지 않으니 차후 추적검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자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주위에 아픈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도 혹시 암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신규로 추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꼭 알려줘야 할까요?

Editor 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 보험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에 과거의 병력과 사고 이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의무는 나중에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사전에 약속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할까?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범위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라고 한정지어 놓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변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약서에서 묻는 대표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 사례의 가입자는 종합검진을 받기는 했지만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질문에 대해 ‘질병 의심소견’이라고도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최소 5개월 전이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소견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특별히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줄 필요 없이 신규 보장성 보험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보험 가입자는 다행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서 별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기 전, 또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을 점검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생각보다 복잡한 계약이다. 보험의 청약과 승낙, 유지, 보험금 청구, 계약 관계자 변경, 관련 세법 활용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사람마다 최적의 보험 설계가 다르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M**



김과장! 뭘 그리 열심히 봐?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아~ 제가 요즘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투자과 연금, 건강 등
나이 들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오...나도 당장 팔로우 해야겠음

“내 손안의



노후준비”

딸은 엄마를 닮아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아간다

Editor 조민희 <별별다방으로 오세요> 저자, 작가·칼럼니스트

■ ‘난 그러지 말아야지!’
요즘 현선씨는 혼자 그런 다짐을 자주 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찾물이 끓기를 기다리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새 생각하지요.

‘난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야!’

오늘은 빨래를 개다가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마음속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남편이 고개를 돌려 묻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현선씨는 얼른 둘러댁니다.

“응... 곧 봄이 오겠다고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전의 당신 어머니처럼 인식하고 모진 시어머니는 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현선씨가 새삼스레 십 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된 까닭은, 얼마 전 있었던 아들의 깜짝 선언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조만간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니, 현선씨로선 살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선씨의 머릿속은 아들의 여친,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적령기의 아들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여친이라니 무조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아가씨일지 몹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순조롭다면 조만간 있을 상견례는 어떻게 치러낼 것이며, 예식이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관념도, 풍속도 많이 다르다던데...

“난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자연스럽게 35년 전 그녀 자신이 시어른 되실 분들을 처음 찾아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부모님께 절부터 올리고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았던 그 순간, 현선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똑바로 올려다보기도 전에 모진 말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네 처지를 듣고, 나는 애초에 이 결혼 안 된다고 했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큰 사람이 말며느리로 들어와야 집안이 잘되는 법이거든.”

그날 이후 현선씨 마음의 생채기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매정한 말과 표정은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젠 사라진 줄 알았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현선씨는 나쁜 꿈을 펼쳐 내듯 몸서리를 치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가 될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혼잣말은 시작된 겁니다. 난 절



현선 씨의 다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기부터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쿨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이야.” 두 아들을 일찌감치 장가 보낸 지선이 그렇게 말하자, 작년에 며느리를 본 혜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 되어 보니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심술이 이해가 가더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현선씨의 다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기부터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쿨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이야.”

두 아들을 일찌감치 장가 보낸 지선이 그렇게 말하자, 작년에 며느리를 본 혜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 되어 보니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심술이 이해가 가더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인생이란 그런 건가 봐. 딸은 결국 엄마를 닮아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친구들은 한숨과 미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현선씨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마음으론 그 결론에 순순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한 모진 시어머니를 그녀가 닮아갈 거라니요. 그토록 답답하고 대책 없던 친정엄마를 닮아갈 거라니요.

“난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스무 살 무렵 현선씨는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엄마처럼 미래가 뻔히 보이는 불행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가난한 남자, 더구나 병마와 싸우고 있던

사람과 결혼하여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엄마는 이후로도 딸을 지켜낼 아무런 현실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정형편상 꿈을 접어야 했던 그녀는 굳은 결심을 했지요. 나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유능한 남자와

결혼해 자식들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키울 거라고. 물론 그녀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부모님 무고하시고 밑으로 동생을 셋이나 둔 장남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한 남자였지요. 하지만 처음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결혼이 나중에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분한’ 상대를 고른 대가로, 그녀는 평생 시어머니의 냉랭한 눈빛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돈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훗날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는, 며느리가 쌀과 패물을 친절으로 빼돌리고 있다며 현선씨의 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서럽고 기막혔지만, 그럼에도 현선씨가 시어머니를 끝내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자이던 남편은 장모에게도 더할 수 없이 좋은 사위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할 말을 못 하는 심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만



큼 아내의 어머니에게도 너그럽고 푸근한 사람이었지요. 유약하지만 착한 남편 때문에 그녀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을’이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하고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결국 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현선씨의 결심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현선씨는 요즘 다시 한번 같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내 시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지요. 친구들 말처럼 누구나 하는 빈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선씨에겐 그 말이 참말이어야 할 남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은 며칠 전, 현선씨는 아들에게서 또 한번 깜짝 놀랄 말을 들었거든요. 곧 데려올 여자 친구의 가족이 어머니 단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선씨와 마찬가지로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얘기…

이 무슨 알곳은 운명의 장난일까? 현선씨는 대답할 말을 잇고 말았습니다. 우선 드는 생각은 가련함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홀어머니와 외동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다 헤아릴 듯했지요. 물론, 그렇다고 선뜻 팔 벌려 환영할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의 쪽으로는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을 기대했으니까요.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외로운 친정어머니는 평생 현선씨 어깨 위의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처럼 쌀과 패물을 친정으로 빼돌린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은 늘 혼자 있을 어머니에게 가 있었지요. 아들의 짝이 될 아이는 그런 고민을 모르는 아이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필이면 그런 아이를 짝으로 데려왔고, 현선씨는 마치 을 게 왔다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하고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 말 한마디로 현선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약으로 삼아 내 며느리에게는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반면교사로 삼아 아이들이 맘껏 사랑하며 인생을 펼쳐가도

록 도와준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며느리를 본 인생 선배들은 이구동성, 쉽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황당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선씨는 아무래도 그 말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는데, 뭐가 서운하고 황당하고 분하기까지 할까요? 창밖 멀리 보이는 저 건너 앞산 바위와 나무처럼 말없이 지켜보는 게 우리 인간에겐 그리 어려운 일인 걸까요?

“그런데 이 녀석 말이야, 여자친구 데려온다더니 계절이 바뀌어도 어찌 소식이 없어?”

역시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거실의 남편이 불쑥 애길 꺼냅니다.

“재촉하지 말아요.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설에 인사라도 오려나 했는걸.”

“아휴, 무슨 … 벌써 그런 기대를 해요?”

“어떻게 돼 가냐고 당신이 한번 물어 봐. 그새 틀어진 거 아닌지 몰라. 요즘 애들이 워낙…”

“설마…”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

그날 밤 현선씨는 작심하고 아들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그 친구는 잘 만나고 있냐고 가볍게 물었지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죄송하지만 곧 인사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건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겁니다. 현선씨는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만나다가 다룰 수도 있고, 그러다 헤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정말 헤어질 거라면 이유는 못내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들이 대답을 해줄까?

그날 밤, 현선씨는 몇 번이나 더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아들이 순순히 대답해 줘서 놀랐고, 아들에게서 들은 결별의 이유가 또한 의외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유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전부터 마뜩지 않아 했다고요. 그럼에도 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일이 틀어진 것은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에 대해 원하는 바가 달라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란 말이 왜 빈말이 될 수밖에 없는지 현선씨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몹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다짐을 하는 동안 타인들도 모두 그런 다짐을 한다는 것! 내가 그런 다짐을 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쉽 없이 변하기에 내 과거의 경험으로 다가올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는 겁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 시어머니인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도저히 못 맞출 조건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다. 얼굴을 봐서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듯했지요. 현선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다.

이른 아침, 긴 꿈을 꾸고 난 듯 잠에서 깬 현선씨는 차를 쫓겨 베란다로 나갔습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는 간밤에 들은 얘길 뭐라고 알려야 할까요? 사실 그녀도 아들의 연애가 끝났다는 것 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다. 그녀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오히려 그녀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다. 아무 욕심도 기대도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지요.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시어머니 특유의 고리타분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환영받지 못할 줄은 몰랐습다.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막상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 '서운하고 분한' 생각마저 들었지요. 시어머니인 나만 수월히 넘어가 주면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민망한 일입다.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혼사의 칼자루가 쥐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어 할 줄 안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죠.

“세상은 매일 새로 배우는 거로구나”

가장 황당한 것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제껏 잘 알지 못했다는 점입다. 남편을 닮았기에 남편이 그랬듯, 착하고 우유부단한 줄 알았지요. 아들도 요즘 아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다. 현실적 조건을 따지고, 손해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결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결별 후에도 과도한 감정적 낭비는 하지 않는 딱 요즘 아이. 내 아들도 모르면서 남의 집 딸아이를 내 마음대로 상상한 것은 더 큰 잘못이겠지요. 더구나 80년대의 감각으로 내 멋대로 훈훈한 일일드라마 각본을 쓰려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란 말이 왜 빈말이 될 수밖에 없는지 현선씨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몹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다짐을 하는 동안 타인들도 모두 그런 다짐을 한다는 것! 내가 그런 다짐을 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쉽 없이 변하기에 내 과거의 경험으로 다가올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다.

현선씨는 손을 뻗어 창문을 열어젖힙다. 비릿한 흠내음이 섞인 이른 봄의 산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간질입다. 부끄러움으로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이 차츰 식어갑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립다.

“세상은 매일 새로 배우는 거로구나.”

“뭐라고? 당신 또 뭐라고 공시령대는 거야?”

어느새 잠을 깬 남편이 묻습다. 현선씨는 둘러맙다.

“이젠 완전한 봄이라고요.” **M**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저자 전영수
발행일 2022.2.15
출판 블랙피쉬

‘인구 변화 이겨낼 주식’을 찾자

Editor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장

■ 바닥이 얇은 개울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은 조용하다. 깊은 강물은 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가장 멀리 간다. 한 사회에도 깊은 강물과 같은 것이 있다. ‘인구 구조’다. 잘 느껴지지 않는 듯하지만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낸다. 변화의 성격도 어느 한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전방위적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풍경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 기피,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대학들, 건강보험료 인상 등 준조세적 복지비용의 증가, 주택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 1인·2인 가구의 증가 등등.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의 깊은 물처럼 오래 멀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 자명하다. 인구 변화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의 표현처럼 ‘이미 와 있는 미래’다.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의 도래(2021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81명, 2021년),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 가속화(2020년 전체 인구의 50% 돌파), 2030년까지 320만 명 넘게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등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고령화·저출산을 우리보다 앞서 겪은 일본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그 파괴력도 크다. 경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고성장은 먼 추억으로만 남았다. 이제는 완

연한 저성장 사회다. 고령화와 저출산·저성장이 만나면서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가 영위하는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다. 연금은 개인의 효(孝)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효든, 연금이든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양자가 피부양자보다 많아야 한다. 피부양자가 부양자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이 시스템이 버티 내기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있다. 피부양자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외동이라 해도 돈을 버는 능력이 걸출하면 부모님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제로 얘기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역시 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 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인구 구조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시장과 양극화다. 우리나라는 구도심을 확장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해 왔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중 과거처럼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서울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목 놓아 외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공공기관 이주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단 한 번도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해소된 적이 없던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쓴 돈은 무엇이고, 누구의 돈이란 말인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혹시 질적으로 바뀐 사회 구조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은 아니었을까. 정치적으로는 필요했겠



지금까지 출산율 높이기와 균형발전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악화됐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현재 학생들과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투자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원 참가형 사회' 같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만 말이다.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전략을 짜야 고령화·저성장이라는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도, 개인도 같이 붙들고 고민해야 한다. 그 답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옆 나라 일본의 경험만 해도 그렇다. 고령화 대국 일본은 현재 노인 문제에 관한 살아 있는 인류학 교과서와 같은 나라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노인 부양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고령화·저성장이라는 난제를 끌어안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 기회로 바꿔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구통계학 전문가이자 일본 전문가인 전영수 교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아이디어의 출발은 이렇다.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춰 모든 걸 재조정하는 게 수순이다. 포인트는 줄어든 인구를 소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산율 높이기와 균형발전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악화됐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현재 학생들과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투자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자

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원 참가형 사회' 같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구조와 부동산에 관한 논쟁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주식투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인구 변화를 이겨낼 주식'을 찾아야 한다. 어떤 주식을 말하는 것일까. 유망주를 찾기 위한 시작은 역시 인구 구조다. 앞으로는 기업에도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게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자본을 축적해 고용하고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가 실현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혁신 모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 책임, 지역 양극화 등 사회적 긴장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이동을 내재화된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인상을 받은 것은 시니어 시장에 대한 일본의 경험이다. 시니어라는 한마디 말로 묶기엔 시니어 시장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라고 한다. 노인용 제품이라는 단일 콘셉트로 접근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 고령 연령을 세분화해 프리미엄시니어(65~74세), 미드시니어(75~84세), 업시니어(85세 이상)로 구분한다. 앞으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일본 시니어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현재 위기의 얼굴로 찾아왔다. 그러나 기회의 얼굴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한국 사회는 이 절체절명의 도전 앞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M**

연금, 묵히지 말고 수익률 확인!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

연금, 그냥 묵히고 계십니까?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세요.

연금은 미래다 | 유튜브에서 **미래에셋 연금 Q** 을 검색하세요!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
연금자산/은퇴설계부문 선정
주최·주관 :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신규 다이렉트계좌 온라인 0.014%/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ETF 보수는 투자설명서 및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177호(2021.09.01~2022.08.31)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973호 (2021.09.17~2022.09.16)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
연금자산/은퇴설계부문 선정
주최·주관 :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

연금이 미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지금 탑승하십시오



연금 투자,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ETF, 펀드, 리츠, TDF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
미래에셋증권이라면 바로 가능합니다.

연금은 미래다 | 유튜브에서 **미래에셋 연금 Q** 을 검색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신규 다 이렉트계좌 온라인 0.014%/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ETF 보수는 투자설명서 및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0365호(2022.02.08~2023.02.07)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혁신기업에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하는 「미래에셋증권 랩어카운트」

S&P지수+ α 수익추구!

+ α 의 큰 그림을 만나십시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시수
(DJSI world) 10년 연속 선정

주관: S&P Global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랩계약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랩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랩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수수료는 계약별로 상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21-04352호 (2021.09.10~2022.09.09)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224호 (2021.12.09~2022.12.08)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